

#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신 청 인(임차인) ○ ○ ○

○○시 ○○구 ○○로 ○○ ◎◎빌라 나동 ○○○호

(우편번호: 000 - 000)

피 신 청 인 (임대인) △ △ △

○○시 ○○구 ○○로 ○○(우편번호: ○○○ - ○○○)

#### 신 청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아 래

- 1. 임대차 계약 일자 : 20○○. ○. ○.
- 2. 임차 보증금액 : 금30,000,000 원
- 3. 임대차 기간 : 20○○. ○. ○.부터 12개월
- 4. 주민등록일자 : 2000. 0. 0.
- 5. 점유개시일자 : 20 ○. ○. ○.
- 6. 확 정 일 자 : 2000. 0. 0.

### 신 청 이 유

신청인은 20○○. ○. ○. 피신청인 소유의 ○○시 ○○구 ○○동 ○○ ◎◎빌라나동 ○○○호 대하여 임차보증금 23,000,000원 기간 12개월로 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〇〇. 〇. 〇.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하고 있다가 임대차기간의 만형 전에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를 하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간만료 즉시 피신청인을 상대로 〇〇지방법원 20〇〇 머〇〇〇호로 임차보증금청구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기일인 20〇〇. 〇. 〇. 동법원으로부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2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받고 이는 확정되었으나 피신청인이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인은 이미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여야 할 처지에 있으므로 우선 임차인으로서 지위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첨 부 서 류

1. 임대차계약서	1통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건축물대장	1통

5. 조정결정문 1통

2000. 0. 0.

신청인 0 0 (인)



##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 ○시 ○ ○구 ○ ○동 ○ ○ ◎ ◎ 빌라 나동

[도로명주소] ○ ○시 ○ ○구 ○ ○로 ○ ○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지붕 4층

다세대주택
1층 122.16㎡ 2층 141.8㎡ 3층 141.8 ㎡
4층 98.9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시 ○○구 ○○동 ○○ 대 450㎡

전유부분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1층 103호 34.02㎡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 55800분의 2541 대지권. 끝.

관 할 법 원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된 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시 • 군법원		임대차가 종료되었 보종금을 반환받지 때 (동법 3조의3 1항)	》 네한법물구조공단 - -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 런 법 규	주택임대.	차보호법 3조의 3	
불복절차 및 기간					
비용	<ul> <li>인지액: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li> <li>·등기신청수수료: ○○○원(□□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li> <li>·송달료: 송달료 3회분(1인당, 현 1회분은 3,720원임)</li> <li>·등록면허세: 6,000원(지방세법 28조1항1호)</li> <li>·교육세: 1,200원 (지방세법 151조1항2호)</li> </ul>				
첩부서류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전입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등본이나 초본)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 거주사실확인서 1부 · 별지목록 6부(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별지도면 첩부)				
기 타 첩부서류	<ul> <li>등기사항증명서상</li> <li>사용하고 있음을 증</li> <li>건물이 등기되어 있</li> <li>대리신청의 경우:</li> <li>계약해지통고서를</li> </ul>	증명할 수 있는 있지 않은 경우 위임장 및 인김	자료 첩부 : 건축물관 }증명 첩부		란